

한국정신간호학회 회원 연구비 지원 사업 규정

2018. 5. 31 제정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한국정신간호학회 회원들이 연구자로서 발전하는데 필요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의욕 고취와 연구능력을 배양하며, 창의적인 연구 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공고)

연구비 모집 공고는 격년 6월에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3 조 (연구비 신청자격)

- ① 연구비의 신청자격은 한국정신간호학회 정회원으로 한다.
- ② 학위논문과 동일한 주제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

제 4 조 (연구기간)

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, 경우에 따라서 한국정신간호학회 교육위원회 승인 후 1년 연장할 수 있다.

제 5 조 (연구계획서 심사기준 및 선정 절차)

제출된 연구계획서는 한국정신간호학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

가. 심사기준

- 1) 연구의 목적, 필요성
- 2) 연구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과 타당성
- 3) 연구결과의 공헌과 기여도
- 4)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

나. 선정절차

- 1) 한국정신간호학회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정신간호학 전공교수 2인이 신청과제를 평가 및 심사한다. 이때 평가 및 심사는 블라인드로 진행한다.
- 2) 심사된 결과를 기반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연구 과제를 결정

한다.

제 6 조 (연구계획서 내용변경)

승인받은 연구내용의 부분적 변경은 한국정신간호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7 조 (연구비 지급)

연구비는 연구계획서 승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.

제 8 조 (연구보고서 작성 및 제출)

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 후 최종보고서 3부와 전자문서, 연구비 사용 내역서 및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정신간호학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출된 연구보고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연구목적의 달성여부를 평가한 후 완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연장 승인된 기간 후에도 연구를 완결하지 못한 경우 미결사유서와 함께 사용연구비의 1/2을 반환해야 한다.

제 9조 (연구결과의 학술발표 및 출판)

① 연구결과는 연구종료 후 2년 이내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또는 SCI 급 등재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연구결과는 2년 이내에 한국정신간호학회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나 구두 발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연구논문의 표시

연구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.

가. 국문일 경우 ‘ 이 논문은 20__년도 한국정신간호학회 연구비 지원 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음’

나. 영문일 경우 ‘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in 20__ ’

부칙

제 1조. (시행일) 본 규정은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